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Part 3

안전성조사



- 01 안전성조사란?
- 02 안전성조사 절차
- 03 리콜제도란?
- 04 리콜 행정처분 절차

01 안전성조사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구입·조사하여 제품 인증 당시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나와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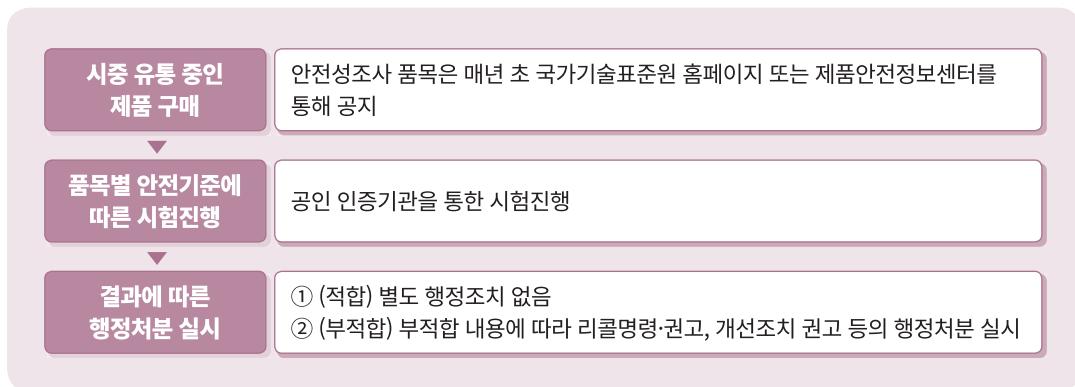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 ·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의2. 제품의 기술상 · 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 ·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 · 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2 안전성조사 절차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권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4.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6. 삭제
7.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 외에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03 리콜제도란?

제품 결함으로 신체,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사업자에게 유통망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제품리콜은 ①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에 따른 조치 ② 사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조치 ③ 제품사고에 따른 조치가 있습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수거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에서는 이를 '리콜'이라고 정의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에 나와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관련법령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관련법령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4 리콜 행정처분 절차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에 따라 리콜 명령·권고,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리콜 시, 행정처분은 안전기준 부적합 시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최종결함, 중결함, 경결함으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처분	사유	명령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	부적합 내용 최종결함	· 수거·환불 등 · 언론 등 공표
수거등의 권고(리콜권고)	부적합 내용 중결함	· 수거·환불 등
개선조치 권고	부적합 내용 경결함	· 부적합 사항 개선 후 출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에 나와있습니다.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

관련법령

-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 “경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제품의 개선조치를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든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기관에 그 사실을 자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④ 삭제.
-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 또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관련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해당 제품은 향후 안전성조사 시 시료의 수를 직전 안전성조사 시 시료 수 보다 3배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3차례 이상의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이 없는 제품은 동종 품목 안전성조사 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안전성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확인신고효력상실,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개선명령, 신규 안전인증 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리콜의 주요 형태]

수리	교환	환급	파기
해당제품의 부품교환 등으로 결함의 원전한 시정이 가능	결함이 없는 같은 제품 또는 동등한 다른 제품과 교체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구입가격을 환불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